

[붙임 2]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무료교육 지원대상자 분류표

- 기회균등대상자 : 경제적 사유로 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자녀
- 사회적다양성대상자 :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구 분	대 상 자	지원 근거
기회균등 대상자 (6)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의 2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호
	한부모가족보호 대상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교육급여 수급자	기회균등대상자 외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학생 등
사회적 다양성 대상자 (7)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 제14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교육복지우선지원교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9조, 제11조, 제12조
	도서·벽지 지역 학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입소 아동 중 기회균등 대상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동에 한함
	학교 밖 청소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제2조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60조3(대안학교) 해당 기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 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해당 기관
	학교장 추천자	‘학교장추천위원회’심의, 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